

##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정보보호 현황 보고

대통령님께서 전자정부 로드맵의 성과와 과제, 정보공유, 정보보호 및 보안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혁신위·행자부가 평가한 전자정부 성과와 정보보호 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보고드립니다

### < 요약 >

- (전자정부) 대부분 과제가 원활히 추진중이며  
국제사회에서 전자정부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
  - 31개 로드맵 과제 중 30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기업의 74%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기업의 93%가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을 제시(대한상의조사결과, ’07.4)
  - UN 전자정부지수 5위(’05), 미 브라운대 평가 1위(’07) 등  
국제사회에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다부처 관련사업의 일정이 지연되고 이용활성화가 저조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분석
- ⇒ 미흡한 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 임기내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 (정보보호) 정보보안은 적절히 추진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 (정보보안) ’07.3월 정책실장께 보고드린 『사이버안전 강화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민간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 노출된 개인 정보를 삭제조치하고 있으나
    - 관리자·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개인정보의 노출이 완벽히 근절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
- ⇒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제도보완, 인식제고, 솔루션 보급 등을 추진

## I. 추진배경 및 경과

### □ 대통령님 지시

- 전자정부 로드맵의 성과평가 그리고, 정보공유, 정보보호 및 보안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보회의에 보고할 것(’07.7.12, 국정상황실장에게 구두지시)
-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 정보통합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해 줄 것(’07.7.23, 수석보좌관회의)
- 정보 공개·정보 보호·정보 보안을 행자부에서 적절한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고할 것(’07.7.24, 국무회의)
- 비서실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07.8.6, 정무관계회의)

### □ 추진경과

#### <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 혁신위원회가 전자정부 31개 로드맵 과제를 평가(’06.12~’07.1)
- 행자부가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전자정부 성과를 점검(’07.4~’07.8)
- 혁신관리수석실은 행자부와 과제별 미비점,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07.7~8)

\* 행자부 점검은 과제별 성과측정에만 국한, 미비점과 시사점 도출이 부족

#### <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

- 혁신관리비서관 주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2차 회의를 실시, 그간의 정보보호 현황·대책을 종합 점검(’07.7 ~ ’07.8)

\* 관계기관 : 국정원, 행자부, 정통부, NIA(한국정보사회진흥원),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감사원의 종합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추가할 예정(’07.9~12)

## II.

##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1. 전자정부 추진성과 점검결과

#### 가. 전반적 평가

◆ UN이 제시한 발전단계 중 최고 수준인 5단계(통합처리) 달성

\* UN은 통합처리 수준을 80% 달성한 것으로 평가(’05년 기준)

◆ 국제기구, 해외 전자정부 관계자로부터 긍정적 평가

\* “한국은 전자정부를 통해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 및 피드백 효과를 보여줬다”(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UN 사무차장, 2005.6)

□ (국제적 평가) 전자정부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화



※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정부 관련 각종 국제적 평가 개요(첨부1) 및 전자정부 시스템의 국제적 공인사례(첨부2) 참조

□ (단계) 정보가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통합 처리되는 단계 달성

○ 수직적 통합 : BH(e-지원)→국조실(국정관리)→각부처(온나라)→시도(온나라)

○ 수평적 통합 : 전 중앙부처·43개 공공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등

□ (과제별 점검) 31개 과제중 정상추진 이상이 30개로 대부분이 목표 달성

○ 다만, 형사사법통합체계 구축 등 일부 과제(4개)는 사업확대, 부처갈등 등의 사유로 구축일정이 지연

\* 구분기준 : 우수(9개, 성과목표를 초과달성), 정상추진(21개, 성과목표 수준 달성 또는 달성이 예상), 미흡(1개, 진척율이 미흡하고 성과목표 미달성) 으로 구분

\* 국회 등 외생적 변수에 의한 지연, 사업범위 축소를 고려하여 점검

※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별 점검결과 요약(첨부3) 참조

## 나. 분야별 세부 점검 결과

- ◆ 일하는 방식 : 의사결정과정의 기록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강화
- ◆ 대국민 서비스 : G4C 및 홈택스 등으로 안방민원시대의 본격 진입,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행정민주성 제고
- ◆ 정보자원 관리 : 정부전산자원의 통합관리로 시스템의 안정성·보안성 극대화

### 1]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11개)

- (업무 전자화) 업무 전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증대
  - 시도, 시군구의 공통업무 전자화를 통해 중앙-지방간 행정처리 간소화
  - \* 중앙-지자체간 보고체계 온라인화 : (’05) 270종 → (’06) 665종
  - ‘온-나라 시스템’을 확산, 정책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
- (정보공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 \* 공유정보 확대 : 20종(’03) → 42종(’07.6), 연간 2,480억원의 비용절감
  - \* 여권발급(7종),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14종) 신청시 구비서류 폐지

### 2] 대국민 서비스 확산(14개)

- (민원인) 전자민원·홈택스 등을 고도화, 안방민원시대 본격화

- \* G4C(온라인 민원 이용건수/연) : 638만건(’02) → 4,500만건(’07년 예상) ↑
- \* 홈택스 (전자신고 비율) : 0건(’02) → 81.1%(’07.8) ↑
- \* 국민참여포털(복합민원처리일수) : 44일(’04) → 14일 (’06) ↓

- (기업) One-Stop 처리기반을 마련,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 \* (G4B 창구) 기업의 창업에서 폐업까지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 \* (전자통관)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 (’02) 9.6일 → (’06) 3.9일 ↓

※ 기업의 74%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기업 93%가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을 제시(대한상공회의소, ’07.4) (첨부 4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참여)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행정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국민의 전자적 참여를 확대,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

- \* 참여포털 (국민제안건수/연) : 571건(’02) → 38,462건(’06) ↑
- \* 공개포털(행정정보 공개 목록 건수/연) : 0건(’02) → 73백만건(’06) ↑

(’07.9.3,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정보보호 현황 보고, 혁신관리비서관실)

### ③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혁신(5개)

○ (정보자원)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정보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장비당 월평균 장애시간이 67분(통합전)에서 1.15분(’07.8)으로 감소

○ (법제정비) 전자정부법 개정(’07.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07.5) 등을 통해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상기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345개 개정(’06~’07.6)

## 다. 전자정부 추진의 미흡한 점

### ① 전자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 ‘Ⅲ.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에서 보고

### ② 다부처 관련 사업의 추진이 부진

○ 일부 다부처 관련 사업이 입법지연, 부처간 갈등으로 추진 지연되거나 성과가 미흡

\* 정보공유체계구축(입법지연),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부처간 갈등)의 진도율이 70% 수준(’07.8)

### ③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활성화 미흡

○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대비 이용율이 저조

\* 전자정부 서비스 인지도 : 73%(’06) , 서비스 활용도 : 23%(’03) → 47%(’06)

<베어링포인트 조사결과(성인남녀 1,007명 대상, ’06.11)>

◆ 최근 1년간 행정서비스 이용경험자가 95%이고, 전자정부 인지도는 72.6%,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는 47%임

※ 전자정부 이용서비스 등 상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 4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조

## 2. 향후 조치계획

혁신관리수석실에서 조치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전자정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① 추진일정이 지연된 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참여정부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08.2)
  - 혁신관리수석실에서 행자부와 협조하여 추진상황 지속 관리
- ②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추진
  - 전자정부 대표 포털(www.korea.go.kr) 본격 가동,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안내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대표포털 개선작업 추진
    - \* 대통령 지시(’07.5) :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통합 안내할 수 있는 통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것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성과에 대한 홍보 추진

### < 전자정부 성과 홍보 추진 >

-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집대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개최(’07.9.19~21, 코엑스)
  - 전자정부 주간으로 지정,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 동시 개최
  - 각 부처 공무원, 학계·업계·일반국민 등 800여명 참석 예정
- ◆ 세계로 진출하는 해외 홍보 중점 추진(’07.8~11)
  - 해외 로드쇼 개최 및 역 벤치마킹 지원

- ③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마련,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제시
  - 참여정부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전자정부를 계승·발전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할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 마련(행자부)
    - 수요자 중심, 시스템 기반 정부혁신, 사회안전 실현, 기술변화에  
대응한 전자정부 등 4대 목표를 도출
    -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화 작업을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

### III.

##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 ◆ 혁신관리수석실 주관으로 TF를 구성, 정보보호 현황과 부처에서 추진중인 대책을 종합 정리한 자료임
- ◆ 정보공유·정보보호와 관련된 감사원 종합실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을 추가하여 보고리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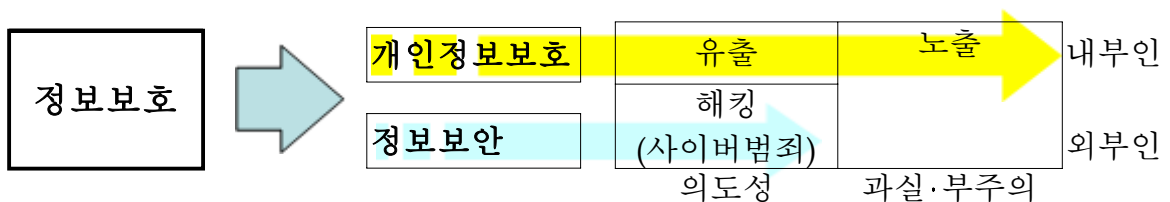
### 1. 정보화 확산

- (정보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사이버 공간으로 삶의 중심이 전환
  - \* 인구 100명당 평균 이용자 수 : 15명(’99) → 70.6명(’06)
- (전자정부) 정부측면에서는 전자정부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정보의 통합·연계, 정보공개, 공동이용 등이 활성화
  - \* 행정정보공동이용건수 : 약 40백만건/연(’07년 예측)

### 2. 정보화 역기능(정보침해)

- ◆ 정보화 확산에 따라 정보침해에 대한 ‘정보보호’가 사회이슈화
- ◆ 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으로 구분 가능
  - 개인정보보호 : 관리자·이용자의 과실·부주의에 의한 ‘노출’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자에 의한 ‘유출’로 구분
  - 정보보안 : 통상 해킹(사이버테러)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대응을 의미

- 정보보호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로 구분



※ 상세한 유형구분 및 유형별 사례는 (첨부5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보보호 관련 사례의 유형구분) 참조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 (정보 유출) 접근권한이 있는 내부인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유용하는 경우

\* 통신사업자(KT, 하나로 텔레콤)가 자사 고객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자 회사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건(’07.8)

(’07.9.3,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정보보호 현황 보고, 혁신관리비서관실)

- (정보 노출) 접근권한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리자 과실 또는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관리자 과실	시스템 설계 미흡	이용자 부주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50%	39.2%	10.8%
민간(구글DB 주민번호노출)	20.3%	32.3%	47.4%

※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첨부 6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유형) 참조

- (정보보안) 접근권한이 없는 외부인이 기술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의 관점에서 접근

### 3. 정보보호 체계

-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행자부), 민간분야(정통부, 재경부 등) 별로 개별법령에 근거한 보호체계 구성

공공분야	민간분야	
행자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정통부	정보통신(정보통신망법)
	재경부 등	금융·신용(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등)
	복지부 등	보건의료(보건의료법 등)

국가정보원 :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정보보호 솔루션 보급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기반 제공

- 의도적인 정보유출의 경우에는 소관법령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 → 검찰의 조사를 거쳐 개별 법령에 의해 처벌
- (정보보안) 국정원의 종합관리하에 공공분야는 행자부, 민간분야는 정통부가 담당





## 4. 그간의 노력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05.4 행자부, ’06.4 정통부)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공공부문, 행자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 과정의 인터넷 공개 등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
  - (정보공유)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시 로그기록 생성 등 제도적·기술적 보안책 마련
- ※ (첨부 7 기관별 개인정보 취급 및 공유현황)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관련 보안대책 >

- \* 제도적 장치 : 정보열람시 본인 사전동의 의무화, 오·남용시 처벌규정 도입,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 추진(국회계류중) 등
- \* 기술적 대책 : 정보유통 전과정의 암호화, 로그정보 관리, 데이터 레벨링을 통한 제한적 정보 제공 등

-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지속 점검, 삭제조치
    - \* 공공기관 웹사이트 노출건수 : 73천건(’06 하반기) → 25천건(’07상반기)
  - (민간부문,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업자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활용시 동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강화(정보통신망법 개정)
  - 민간포털 등의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지속 점검, 삭제 조치하는 한편,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을 대체할 개인식별번호(i-Pin) 도입
    - \* 민간 웹사이트 노출건수 : 82천건(’06.7) → 3천건(’07.6)
- (정보보안) ’07.3월 정책실장 보고 이후, 국정원 주관으로 사이버 안전 강화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 중
    - (제도) 정보화예산의 8~9%를 정보보호예산으로 배정토록 하는 ‘정보보호예산 확충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기술)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여 보안강화 추진, 해킹 공격에 대비한 탐지기법 800여종을 개발하여 보안관계 업무에 적용
  - ⇒ (성과) 인터넷 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 대응 시간 단축(30→20분)
    - \* 사이버테러 중 62%(28,282/45,341건)를 탐지하여 즉시 차단, 38%는 조사·복구를 수행하여 피해확산을 방지(~’07.6)

## 5. 미비점 및 원인분석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유출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의 노출도 지속

○ (개인정보 유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는 증가하나 처벌이 미미

\* 개인정보 유출의 증가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 ‘유출해도 걸리지 않겠지’라는 인식과 법률적 제재 미약이 복합적으로 작용

< 개인정보 침해 현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침해사고 건수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 (공공부문) : 개인정보 유출시 대부분은 경징계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형사처벌은 8%에 불과

계 구분	징계처분							사법처리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소계	징역	벌금
61	56	-	1	1	4	19	31	5	-	5

- (민간부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미약

○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노출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완벽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관리자 과실, 이용자의 부주의와 시스템 설계 오류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열악에 기인

\* 공공부문 웹페이지(27,388개)를 총괄하는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곤란

□ (정보보안) 강화대책(’07.3월 보고) 중 법제정비와 사이버 책임관 지정이 지연

○ (법제정비) 관계부처간 의견대립으로 정부안 마련이 지연

○ (사이버 책임관) 기관별 사이버 책임관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책임감 있는 정보보안 활동에 차질

## 6. 향후 개선방안

-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현황·침해이유를 관계기관에 통보, 시정토록 조치
  - 취약기관(개인정보 노출기관)에 대한 보안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 원인 별로 대책을 마련
  - (제도보완)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 추진
    - (공공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고발 등 처벌·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 적극 추진
    - (민간부문) : 현행 정통망법상 과태료 상향 조정, 벌칙조항 신설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
  - (인식제고) 업무담당자,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
  - (인프라구축) 개인정보보호 S/W를 개발 보급 및 조직보강 등의 인프라 구축
    - 관리자이용자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S/W를 개발 보급
    - 정보의 유출·유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확충
- (정보보안) 사이버안전 강화대책(’07.3) 중 추진이 미흡사항을 집중 보완
  -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으로 조정 추진
  -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사이버보안책임관 지정을 의무화, 책임있는 보안관리 체계 구축

<첨부 1>

전자정부 관련 각종 국제적 평가 개요

□ UN, 미 브라운대, ITU 평가 비교

구분	UN 준비지수(e-Readiness)	미국 브라운대 평가	ITU 디지털기회지수
평가주체	UN 사무국/미국 행정학회	브라운대학교/공공정책센터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대상국가	UN 회원국 191개국	세계 각국 198개국	세계 각국 181개국
평가방법	정부대표 웹사이트 및 전자정부 준비지수(정보통신, 인적자본 등) 관련 통계 제공사이트를 참조하여 평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약 1천 7천여개 웹사이트 평가	정보통신 인프라 보급, 기회제공 및 활용도 등 3가지 요소 종합·분석
평가지표	웹 수준,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본 등 3대 영역 20여개 항목	정책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등 18개 항목	인터넷 보급률, 소득대비 통신요금비율, 인터넷 이용율 등 11가지 지표
평가결과	’05년 세계 5위 ※ ’06년도는 평가지표 개선을 미 실시	’07년 세계 1위	’07년 세계 1위
상위국가	미국(1), 덴마크(2), 스웨덴(3), 영국(4), 호주(6)	싱가폴(2), 대만(3), 미국(4), 영국(5), 캐나다(6)	일본(2), 덴마크(3), 아일랜드(4)
비고	온라인 국민 참여지수 (e-Participation) 세계 4위	-	-

□ 그간의 순위 변화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UN평가	13위	5위	5위	미 실시	’07.12월 발표 예정	2년 연속 5위
브라운대 평가	87위	32위	86위	1위	1위	2년 연속 1위
ITU 지수 <sup>1)</sup>	4위	미 실시	1위	1위	1위	3년 연속 1위

□ 전자정부 성숙도(UN의 5단계 발전모형)

구분	수준1 (착수)	수준2 (발전)	수준3 (상호작용)	수준4 (전자거래)	수준5 (통합처리)	평균
2003년	100%	87%	51%	12%	16%	53%
2004년	100%	100%	100%	70.7%	68.5%	89%
2005년	100%	98%	96%	90%	80%	93%

※ ‘수준5’ 진입율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05)

1) 2003년까지 디지털접근지수로 발표되었다가 2005년부터 디지털기회지수로 체계 개편

<첨부 2>

전자정부시스템의 국제적 공인사례

□ 국제기구 수상

- 출입국심사(법무부) : UN의 공공서비스혁신상(’07)
- 정보화마을(행자부) : 세계전자정부포럼의 전자정부특별상(’06)
- 나라장터(조달청) : 세계정보기술올림픽(WCIT)의 공공분야 최우수상(’06)

□ 국제기구 우수사례 선정

- 홈텍스 서비스(국세청) : OECD보고서 ‘전자세정 우수사례’(’06)
- 참여마당신문고(고충위) : 세계전자정부포럼 ‘Online Politics Tropy Top10’(’06.10)
- 전자무역(산자부) : APEC 2005 리포트 ‘World Advanced’(’05)
- 긴급재난문자서비스(방재청) : 아시아재난감소회의 ‘우수사례’(’06.3)
-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 : 반부패포럼 ‘부패방지 우수사례’(’03)

□ 국제표준 지정

- 나라장터(조달청) : UN/CEFACT 제6차 포럼 국제입찰 표준안(’05.3)
- SPi-1357(중기청) : 제13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에 채택(’06.9)
- 국제특허출원시스템(특허청) : WIPO 정보기술표준(’06.5)

□ 국제인증 획득

- 온라인특허출원시스템(특허청) : ISO 20000 인증(’06.12)
- 농식품안전안심시스템(농림부) : ISO 9001 인증(’05.12)
-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 : ISO 20000(’06.10), ISO 9001(’06.11)

<첨부 3>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별 점검결과(’07.8.14기준)**

로드맵 과제명		주관기관	진행단계		점검결과		
			단계	진행율			
분야	의제	평균 진행율		91 %			
일하는 방식 혁신	전자적 업무처리 정착	1.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1.1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행정자치부	고도화	95 %	정상추진
			1.2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국가기록원	고도화/확산	85 %	정상추진
			1.3 문서대장의 단계적 전자화	행정자치부	시행	80 %	정상추진
		2. 국가 및 지방재정 고도화	2.1 지방재정정보화	행정자치부	고도화	80 %	정상추진
			2.2 국가재정정보 고도화	재정경제부	완료	100%	정상추진
			2.3 지방교육재정 정보화	교육인적자원부	고도화/확대구축	80 %	정상추진
		3. 전지지방정부 구현	3.1 시도 행정 고도화	행정자치부	완료	100 %	정상추진
			3.2 시군구 행정 정보화	행정자치부	고도화	85 %	우수
		4. 전자감사체계 구축		감사원	완료	100 %	정상추진
		5. 전자국회 구현		국회사무처	완료	100 %	정상추진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형사사법구축기획단	시스템 구축	70 %	보통
행정정보공용이용 확대	7. 인사행정 종합 정보화	7.1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행정자치부	완료	100 %	정상추진	
		7.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중앙인사위	완료	100 %	정상추진	
	8. 외교통상 정보화		외교통상부	완료	100 %	정상추진	
	9.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9.1 e-지원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완료	100 %	정상추진	
		9.2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	고도화	70 %	우수	
	10. 행정정보공용 확대	10.1 행정정보 공유 확대	행정자치부	확대 구축	70 %	우수	
		10.2 행정기관 지식관리체계 확산	행정자치부	시스템 구축	85%	정상추진	
	11. 업무재설계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행정자치부	고도화	85 %	정상추진	
	대국민 서비스 확산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행정자치부	완료	100 %	정상추진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소방방재청	고도화/확대구축	85 %	우수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14.1 건축행정 정보화	건설교통부	완료	100 %
14.2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				행정자치부	완료	100 %	정상추진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국세청	완료	100 %	정상추진	
16. 국가복지종합서비스			보건복지부	완료	100 %	정상추진	
17.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17.1 식의약품 안전관리서비스	식품안전청	확대구축	90 %	우수
			17.2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서비스	농림부/해수부	확대구축	90 %	정상추진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노동부	완료	100 %	정상추진	
19.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법제처	완료	100 %	정상추진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산업자원부	확대구축	90 %	정상추진	
	21. 국가물류종합서비스	해수부/관세청	완료	100 %	우수		
	22. 전자무역서비스	산자부/관세청	확대구축	90 %	정상추진		
	23.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산자/법무/노동	확대구축	85 %	정상추진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정정상추진신부	확대지원	80 %	정상추진		
온라인 국민참여	25. 온라인 국민참여	25.1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행정자치부	확대구축	90 %	우수	
		25.2 전자정부서비스이용 활성화(통합콜센터)	국민고충위/행자부	확대구축	85 %	정상추진	
		25.3 행정정보공개 온라인확대	행정자치부	확대구축	90 %	정상추진	
		25.4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중앙선관위	완료	100 %	보통	
정보자원통합 표준화	26.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정정상추진신부	확산	85 %	우수	
			정정상추진신부	확산	92 %	정상추진	
			정정상추진신부	확산	95 %	정상추진	
	27. 전자정부 통신망고도화		정정상추진신부	확산	92 %	정상추진	
			정정상추진신부	확산	95 %	정상추진	
			정정상추진신부	확산	95 %	정상추진	
정보보호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국정/행자/정통	확대구축	80 %	정상추진		
	30. 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행자부	시행	90 %	정상추진		
법제정비	31.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관련 법제정비	행정자치부	시행	90 %	정상추진		

\* 31개 과제 중 일부 과제는 과제별로 세분화, 총 44개 세부과제 중에서 17개 완료

□ 과제별 성과 점검결과 요약

	우수 과제(9개)	정상추진 과제(21개)	보통과제(1개)	계
과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공유확대 온라인 국민참여확대 등	문서처리과정 전자화 정보보호체계 구축 외교통상정보화 등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31개
비율	29%	67.8%	3.2%	100%

□ 진척율 산식(로드맵 과제를 유형별로 구분)

- 1유형 (BPR/ISP)
  - 계획수립(40), BPR/ISP 완료(100)
- 2유형 (BPR/ISP → 시스템구축 )
  - BPR/ISP 계획수립(10), BPR/ISP 완료(40),  
시스템구축 계획수립(80), 시스템구축 완료(100)
- 3유형 (BPR/ISP → 시스템구축 → 확산 또는 고도화)
  - BPR/ISP 계획수립(10), BPR/ISP 완료(30),  
시스템구축 계획수립(40), 시스템구축 완료(70),  
확산(고도화) 계획수립(80), 확산(고도화) 완료(100)

□ 참여정부 임기내 미완료 예상과제 (’08.2월까지 진척율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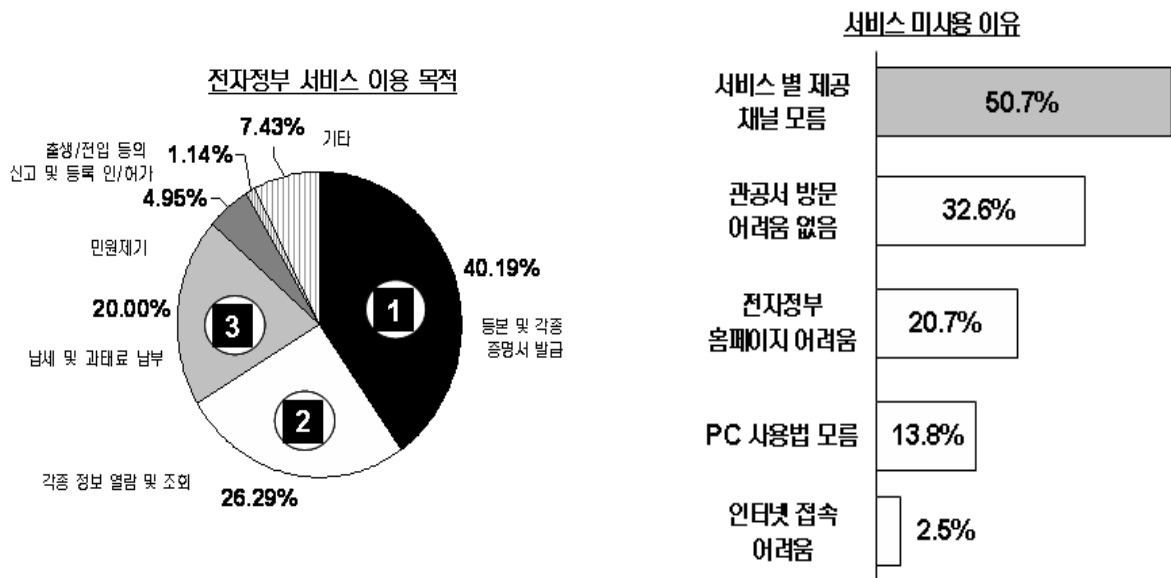
로드맵 과제명		유형	미완료 사유
3. 전지지방정부 구현	3.2 시군구 행정 정보화	범위확대	당초 목표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는 달성하였으나, 고도화기능의 시군구 확산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확대(08.12월 완료, ’07년 개발분 확산 예정)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기관갈등	국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었고, 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한 기관간 협의 지연
10. 행정정보공유 확대	10.1 행정정보 공유 확대	법령미통과	’06.11월 국회제출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현재까지 미통과, 일부부처 정보제공 기피 등으로 추가 공유 대상 기관(은행 등)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발주 지연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범위확대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확산범위 확대(당초 2개 시도 → 변경 9개도)로,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3차 구축사업 착수 지연(’08.4월 완료 예정)

<첨부 4>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베어링포인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성인 남녀 1,007명 대상
- 조사시기/방법 : 2006. 11월, 면접방식의 설문조사
- 주요 조사결과 : 전자정부 인지도 72.6%, 서비스 활용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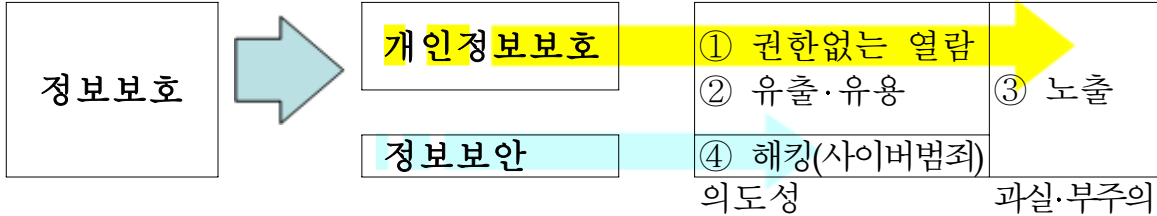
□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정부 구축이후 행정간소화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352개
- 조사기간/방법 : ’07. 4월,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
- 주요 조사결과
  - 기업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율 : 74%
    - 주 이용분야 : 증명발급(38.4%), 세금납부(36.5%), 정보검색(13.3%)
    - 미이용사유 : 서비스내용 모름(32.9%), 복잡한 사용방법(28.1%) 등
  - 기업의 93%가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한 것으로 응답
    - 업무처리시간 단축 79.1%, 업무처리비용 감소 8.6% 등 효과 체감
  - 기업의 전자정부 이용만족도 : 5점 만점에 3.8점(대체로 긍정적)



<첨부 5>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보보호 관련 사례의 유형 구분



1.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례(유형①, ②)

- 정치인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열람한 사례(유형①)
- 정치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사례(유형②)

사 건	유 형	비 고
정부기관(국정원, 경찰청 등)에서 특정 정치인의 정보를 열람, 유출한 사례	권한 있는 열람 : 업무행위 권한 없는 열람 : 유형 ① 외부에 유출한 경우 : 유형 ②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인정보 유출·유용 사례(유형②)

- KT, 하나로 등 통신업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자회사 포털사이트에 가입시킨 사례

3. 개인정보 노출 사례(유형③)

- 고양시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KBS 보도)
- 외교부 홈페이지에 외교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유형③)

4. 해킹(사이버 범죄)(유형④)

- 모대학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국내 56개 기관 홈페이지를 해킹, 104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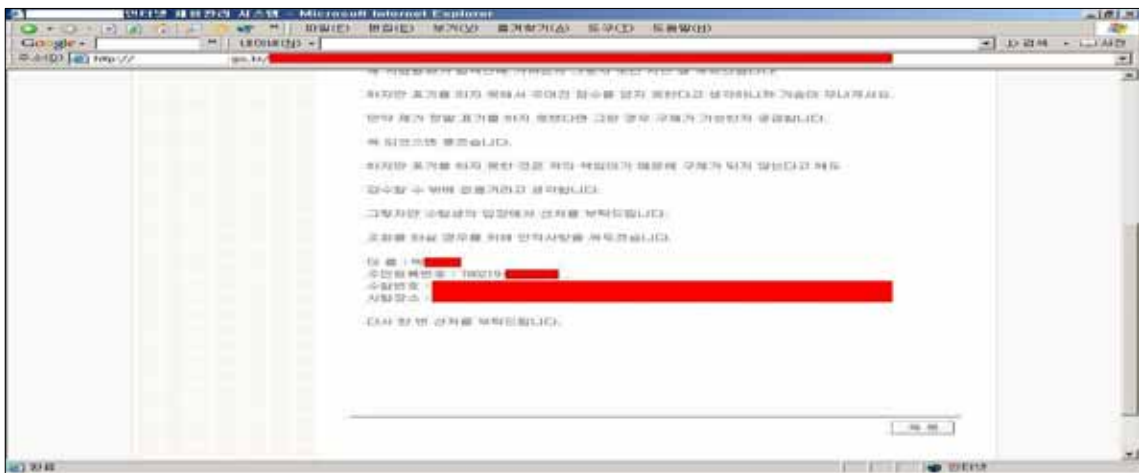
<첨부 6>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유형

< 공공기관 >

① 민원인이 게재한 개인정보 방치(10.8%)

- 민원, 의견, 제안, 진정 등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



② 담당자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게재(50%)

- 홈페이지 관리자 및 자료게시자가 공시송달, 각종 명단 등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	성명	업종	대부업종업	등록일자	결합	기간	업종번호	소재지	주번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전화)
1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06			11-709	유	610	강남구 역삼동	529-
2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82	강	111	서초구 서초동 1209-21	2005-
3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132	회기	769	영등포구 영등포동4 30-2	672-
3-1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132	회기	197	강남구 역삼동 624-11	582-1
4	[redacted]	개인	교정대부	02-11-12			11-32	회기	197	마포구 연리동 29-7 100 강일시터	716-
5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강남구 논현동 19-7 전거점사	514-
6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마포구 도화동 541	703-
7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동작구 동자동 16-8	400-
8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강북구 미곡동 125-25	빌
9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서초구 방배동 440-10	빌
10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동대문구 신성동 96-27	빌
11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서초구 방배동 425-25	빌
12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서초구 방배동 425-25	빌
13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서초구 서초동 1319-5	빌
14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영등포구 영등포동 16-14	빌
15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동대문구 장안동 750	빌
16	[redacted]	법인	교정대부	02-11-12			11-400	회기	56	영등포구 영등포동 425-25	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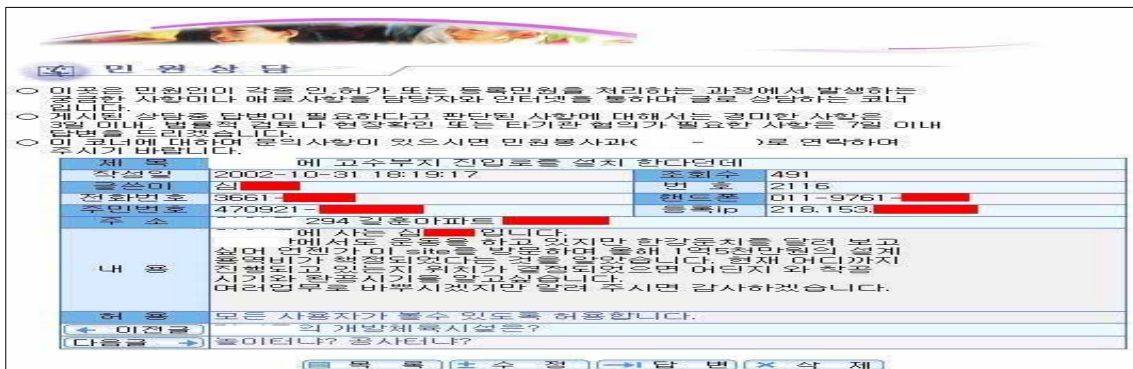
(’07.9.3,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정보보호 현황 보고, 혁신관리비서관실)

- 법률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는 경우 등



### ③ 홈페이지 보안 미흡(39.2%)

- 홈페이지를 잘못 설계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공개할 화면의 범위를 잘못 설정)



- 외부 전문검색엔진에 의해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등



< 민간기관 >

□ 구글DB 주민번호 노출 원인별 분석(’07. 2 ~ ’07. 6)

구 분		세부분류	사이트 수(%)		웹 페이지 수(%)		노출인원(%)	
이용자 직접 게시	본인 정보 게시	경품 사이트 가입여부 문의	13	0.7	66	1.3	95	0.6
		ID 및 P/W 분실 문의	63	3.5	89	1.7	99	0.7
		경품 당첨확인 문의	5	0.3	35	0.7	42	0.3
		취업을 위한 이력서 등록	60	3.3	167	3.2	177	1.2
		본인 민원 신고	420	23.1	714	13.7	2,558	17.2
		기 타	11	0.6	11	0.2	13	0.1
	타인 정보 게시	동호회 명단게시	51	2.8	85	1.6	391	2.6
		타인 민원 게시	414	22.8	746	14.3	1,648	11.1
		인터넷에 노출된 명단 복사 게시	83	4.6	126	2.4	1,776	12.0
	소 계			1,120	61.7	2,039	39.1	7,038
관리자 게시	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331	18.2	1,751	33.6	4,797	32.3
	웹페 이지 게시	경품 당첨자 게시	6	0.3	8	0.2	95	0.6
		문의 메일 답변(공개 게시판)	171	9.4	667	12.8	1,008	6.8
		직원, 회원명단 게시	183	10.1	749	14.4	1,900	12.8
		기 타	4	0.2	5	0.1	5	0.0
소 계			695	38.3	3,180	60.9	7,805	52.6
합 계			1,815	100%	5,219	100%	14,843	100%

<첨부 7>

## 기관별 개인정보 취급 및 공유현황

### I. 공공기관의 취급 개인정보 현황 및 공유방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유방식은 아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

유형	상세 설명	보안
유형1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통해 조회	○ 특정 정보 DB에 대해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용자(타기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조회	GPKI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제공
유형2 :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타기 관 DB와 연동	○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자료내용의 수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연계된 타기관 DB에 제공하여 타기관 DB를 업데이트	데이터 송수신시 GPKI

\*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행정정보공유 대상인 42종의 공유대상정보를 기준으로 분류

### 1. 중앙행정기관의 취급 개인정보 현황 및 공유방식

기관명	취급 개인정보	공유기관	공유방식
대법원	전산호적정보	경찰청, 국가보훈처의 11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유형1
보훈처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병무청, 특허청의 1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보상금, 명예수당	232개 시군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유형2
병무청	병적증명서	경찰청, 보훈처의 7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외교통상부	여권정보	병무청, 외통부의 7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세청, 병무청의 1개 중앙행정기관 강원도의 14개 시도	"
	여권만료대상자정보	16개 시도, 80개 시군구	유형2
법무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경찰청, 국세청의 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07.9.3,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정보보호 현황 보고, 혁신관리비서관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관세청, 국세청외 7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경기도외 4개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국가보훈처, 국세청외 3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교부, 국세청외 1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건교부, 국세청외 1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상훈수여증명	국가보훈처, 행자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변동자료	노동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국세청, 경찰청, 부동산 정보관리센터(행자부), 근로복지공단	유형2
경찰청	운전면허정보	국세청, 병무청외 1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유형1
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병무청, 정통부외 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232개 시군구	유형2
국세청	국세납세증명서	건교부, 관세청외 10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유형1
	납세사실증명원	국세청, 법무부 경기도외 3개 시,도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외통부외 11개 중앙행정기관 강원도외 13개 시,도	"
	사업자등록증명원	보건복지부, 조달청외 26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휴업사실증명원	보건복지부, 노동부외 6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폐업사실증명원	보건복지부, 노동부외 1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6개	"
	종합소득, 사업자 현황 황변경	232개 시군구, 노동부, 4대보험연계센터	유형2
산업자원부	공장등록증명	조달청, 병무청외 1개 중앙행정기관 강원도외 7개 시,도	유형1
특허청	특허등록원부	국세청 경상남도외 3개 시,도	"

(’07.9.3,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정보보호 현황 보고, 혁신관리비서관실)

	실용실안등록원부	경상남도	"
	디자인등록원부	경상남도	"
	상품등록원부	관세청,국세청 경상남도	"
건설교통부	부동산실거래정보	국세청	<b>유형2</b>
국방부	퇴직군인연금정보	232개 시군구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기록정보, 전출입정보	기획예산처 등 5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연금, 금융결제원	"

**2. 지방행정기관의 취급개인정보 현황 및 공유방식**

단위	취급 개인정보	공유기관	공유방식
광역시·도	자동차등록원부(갑)	건교부등 중앙행정기관 9개 지방자치단체 16개	<b>유형1</b>
	자동차등록원부(을)	경찰청등 중앙행정기관 9개 지방자치단체 16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병무청,산림청외 중앙행정기관 2개 지방자치단체 16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교부,국세청외 중앙행정기관 1개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13개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경기도외 지방자치단체 4개	"
	지방인사행정자료	국세청,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b>유형2</b>
시, 군, 구	사용승인서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 2개	<b>유형1</b>
	건축허가서	경기도외 지방자치단체 7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병무청,특허청 경상남도	"
	장애인증명	병무청,특허청외 중앙행정기관 2개기관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7개	"
	장애인 카드발급,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b>유형2</b>

### 3. 공공기관의 취급개인정보 현황 및 공유방식

기관	취급 개인정보	공유기관	공유방식
국민연금 관리공단	보험료납입정보, 국민연금급여정보	232개 시군구	유형2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보호등록정보, 표준보수월액정보 암환자정보	232개 시군구	"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공무원연금수혜정보, 재직정보	232개 시군구, 사학연금관리공단	"
사학연금 관리공단	사학연금수혜정보, 재직정보	232개 시군구,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
근로복지 공단	실업자대부, 장애연금, 산재보험	국가보훈처, 232개 시군구	"



## II. 민간기관의 취급 개인정보 현황 및 공유

분야	취급 개인정보	공유기관(공유근거)	공유방식
은행	성명,주소,주민번호,생일,전화번호,핸드폰,결혼기념일,자택구분,주거종류,직장명,부서명,직위,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직장팩스번호,이메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li> <li>○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행법)</li> <li>○ 제휴사(고객 동의를 취득한 경우)</li> </ul>	서류 및 전산
신용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자택전화,휴대전화,이메일,결혼기념일,직장명,부서명,직위,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월소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li> <li>○ 제휴사(고객 동의를 취득한 경우)</li> </ul>	"
증권	성명,주소,주민번호,이메일,전화번호,휴대폰,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직장명,부서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예탁결제원 (자본시장금융투자법)</li> </ul>	"
의료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병력, 가족병력, 의료보험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li> </ul>	"
정보통신	성명,주소,주민번호,이메일,거래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신용카드번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제휴사(고객 동의를 취득한 경우)</li> </ul>	"

※ 취급 개인정보는 각 사업별 가입신청서, 회원가입 양식, 개인정보취급방침 상 수집항목 등을 기초로 조사한 것임

※ 신용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 신용정보업자 : 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채권추심, 신용평가를 하는 업체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